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자료제공 / 건설경제

건설업체가 불법·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벌칙 중 ■ 부분은 새로 개정된 것으로, 회원사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편집자 주]

위반사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p>■ 서면의 발급 및 서류 보존 위반</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li> <li>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li> <li>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li> <li>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li> </ol> <p>- 제1항의 서명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p> <p>-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p>	<p>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p> <p>법 제25조</p> <p>법 제25조의3제1항</p> <p>법 제30조제2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p> <p>*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p> <p>*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p>

위반사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p>■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의 위반</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li> <li>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li> <li>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li> <li>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li> </ol> <p>- 제1항의 서명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p> <p>-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함.</p> <p>-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p> <p>-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p> <p>※ 시행일 : 2010.7.26</p>	<p>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p> <p>법 제25조</p> <p>법 제25조의3제1항</p> <p>법 제30조제2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p> <p>*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p> <p>*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p>

위반사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p><b>■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 위반</b></p> <p>○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p> <p>-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할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3.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ol>	<p>법 제4조</p> <p>법 제25조</p> <p>법 제25조의3제1항</p> <p>법 제30조제1항</p> <p>법 제30조제2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p> <p>*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p> <p>*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b>■ 물품등의 구매 강제금지 규정 위반</b></p> <p>○ 물품·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p>	<p>법 제5조</p> <p>법 제25조</p> <p>법 제25조의3항제1항</p> <p>법 제30조제1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p> <p>*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p> <p>*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위반사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p>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p>	<p>법 제30조제2항</p>	
<p>■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p> <p>○ 법정기일 이내의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p> <p>-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p> <p>-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p> <p>-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 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봄</p>	<p>법 제6조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제1항 법 제30조제1항 법 제30조제2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p> <p>*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p> <p>*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 내국신용장의 개설 위반</p> <p>-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함.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함.</p>	<p>법 제7조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제1항 법 제30조제1항 법 제30조제2항</p>	<p>*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p> <p>*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위반사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p><b>■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b></p> <p>○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li> <li>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li> </ol> <p>-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p> <p>- 제 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함.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봄.</p>	<p>법 제8조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제1항 법 제30조제1항 법 제20조제2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 *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b>■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b></p> <p>○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p> <p>-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p>	<p>법 제9조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제1항 법 제30조제1항 법 제30조제2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 *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위반사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p><b>■ 부당반품의 금지 규정 위반</b></p> <p>○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p> <p>-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li> <li>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li> <li>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li> <li>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li> </ol>	<p>법 제10조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제1항 법 제30조제1항 법 제30조제2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 *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b>■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b></p> <p>○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불하는 경우</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고 한다)하여서는 아니됨.</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할 때 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i> </ol>	<p>법 제11조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제1항 법 제30조제1항 법 제30조제2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 *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위반사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p>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p>		
<p><b>■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b></p> <p>○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불하는 경우</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됨.</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i> <li>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i> <li>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i> <li>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i> <li>5.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li> </ol>	<p>법 제11조 법 제25조 법 제25조의2제1항 법 제30조제1항 법 제30조제2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p> <p>*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p> <p>*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위반사항	근거조항	처벌내용
<p>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p> <p>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p> <p>-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p>		
<p>■ <b>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b></p> <p>○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를 요청하는 경우</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대가를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p>	<p>법 제12조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제1항 법 제30조의3제1항 법 제30조의제2항</p>	<p>*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 *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다음호에 계속〉